

[별지 제13호의2서식] <개정 2010.7.20>

제 호					수출이행여부 신고서		처리기간
							즉시
신 고 인	성 명			생년월일	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		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등록말소한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시 · 도 지 사 귀하							
일련번호	건설기계명	건설기계 등록번호	차대번호	등록말소일	수출신고필증 발급일자		
구 비 서 류	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 1부						수수료
	※ 건설기계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.						없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